

경기도 고시 제2014-323호**파주 발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장이 시행하는 파주 발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12.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마장저수지(문산천) 하류에서 취수한 잉여수를 발랑저수지에 공급하여 매년 농업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발랑, 애룡저수지 구역 농경지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
2.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외 5개리 일원
3. 사업명 : 파주 발랑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4. 사업내용
 - 가. 양수장 1개소 신설, 1개소 재설치
 - 나. 인입수로 1조 916m(개거 1.0m×1.0m ~ 1.5m×1.5)
 - 다. 송수관로 2조 4.78km(ø=300mm, L=1.36km, ø=400mm, L=3.42km)
 - 라. 도수로 1조 1.33km(PE관 ø=300mm)
5. 사업기간 : 2014.12. ~ 2018.12.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장
7. 기 타 : 관련서류 열람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 031-950-3244)

경기도 고시 제2014-5180호**평택 추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추팔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12. 12.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 가. 관리기관 : 평택시
 - (신설) ※ 산업시설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이하 “임대단지”라 한다.)의 임대관리(경기도시공사)
 -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이전대상업체 유치로 공업기반 활성화
 - 지역공업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 다. 추진경위(변경있음)
 - 1986.07.15. : 수도권정비 시행계획 개발유도권역 안의 개발계획 결정(건교부 고시 제306호)
 - 1993.11.12. : 추팔지방공업단지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1993-386호)
 - 1994.04.02. : 추팔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1994-88호)
 - 1994.09.12. : 추팔지방공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1994-253호)
 - 1996.05.07.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98호)
 - 1996.11.08.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6-303호)
 - 1998.07.09. : 추팔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95호)
 - 1998.12.31.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경기도 고시 제1998-529호)
 - 2000.12.11. : 개발사업 준공(경기도 공고 제2000-496호)
 - 2003.09.30. :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3-241호)
 - 2004.06.21. :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4-185호)
 - (신설)○ 2013.04.05. : 추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3-90호)

경 기 도 보

제5123호

2014. 12. 12.(금)

라. 분양(임대)현황(변경있음)
(기정)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m ²)	분양현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분양	미분양		
계		449,913.8	449,913.8	409,054.8	40,859.0	'94 ~ '00	평택시
산업시설 구역	소계	414,146.8	414,146.8	401,538.8	12,608.0		
	분양	325,170.7	325,170.7	325,170.7			
	임대	88,976.1	88,976.1	76,368.1	12,608.0		
지원시설구역		35,767.0	35,767.0	7,516.0	28,251.0		

(변경)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m ²)	분양현황			조성기간	사업시행자
			계	분양	미분양		
계		449,913.8	449,913.8	421,662.8	28,251.0	'94 ~ '00	평택시
산업시설 구역	소계	414,146.8	414,146.8	414,146.8			
	분양	325,170.7	325,170.7	325,170.7			
	임대	88,976.1	88,976.1	88,976.1			
지원시설구역		35,767.0	35,767.0	7,516.0	28,251.0		

마. 입주현황
(기정)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m ²)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38	38	-	414,146.8	414,146.8	-
2004년 5월말 현재	38	38	-	414,146.8	414,146.8	-
향 후 계 획	-	-	-	-	-	-

(변경)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m ²)		
	계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38	38	-	414,146.8	414,146.8	-
2014년 11월말 현재	38	38	-	414,146.8	414,146.8	-
향 후 계 획	-	-	-	-	-	-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 설 명	총 계 획	비 고
○ 단지내도로(m)	5,677	
○ 용수(m ³ /일)	7,376	
○ 전력(mvh)	80,032	
○ 통신(회선)	1,765	
○ 폐수처리(m ³ /일)	20,000	
○ 폐기물매립장(m ³)	19,600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를 입주시켜 생산활동을 지원
- 공단용지를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 하며, 단지 내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입주 기업체 생산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1) 용도별 구획 면적

(단위 : m²)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고
609,999.2 (100%)	414,146.8 (67.9%)	35,767 (5.9%)	115,427.2 (18.9%)	44,658.2 (7.3%)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원시설구역(변경있음)

(기정) ① 산업집적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변경) ①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정) ② 건축법 시행령 부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변경)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현황(변경있음)

(기정)

(단위 : m², 개사)

구 분	업 종	업체수	면적	비 고
계		38	414,146.8	
분양지구	음·식료품, 섬유·의복, 나무·목재	28	325,170.7	
외국인임대지구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업종, N/T마크인증신기술 수반업종	10	88,976.1	

(변경)

(단위 : m², 개사)

구 분	업 종	업체수	면적	비 고
계		38	414,146.8	
분양단지	음식료품, 섬유·의복, 나무·목재	28	325,170.7	
임대단지	“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규정에 의함.	10	88,976.1	

※ 업체수는 분양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변경있음)

1) 입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으로 하며

가) 분양단지 : 음·식료품, 석유·화학, 조립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 업종을 우선 유치업종으로 함.

(기정)나) 임대단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수반업종, 첨단기술 및 제품생산업종, N/T마크인증 신기술 수반업종

(변경)나) 임대단지 : “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규정에 의함.

※ 단, 용수다소비업종, 공해업종(염색, 주물, 도금, 염, 안료, 피혁업종)등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2) 입주자격(변경있음)

(기정)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공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정) 나)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서 산업집적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변경) 나)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자로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등록공장(변경있음)

① 이전공장의 수도권 지역별 우선순위

구 분	비공업지역		공업지역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비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지역	1 순위	2 순위	5 순위	6 순위
자연보전지역	3 순위	4 순위	7 순위	8 순위
성장관리지역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② 분양면적 단위당 인천항 화물의 이용도

(기정) ③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변경)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

④ 전년도 수출실적이 많은 공장

나) 기타공장(변경있음)

(기정) ①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한 첨단업종의 공장(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② 도시형업종의 공장(산업집적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참조)

다) 용수 다소비공장 제한 : 용수공급계획 범위 내에서 면적 당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입주 우선순위에 의한 입주자 선정을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절차 : 용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계약 → 건축허가 → 공장등록

- 마. 사후관리계획
- 1) 분양용지의 관리 :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과 추팔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관리
 - 2) 환경관리
 - 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
 - 나) 입주업체는 기업체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기본방향
 - 가)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통신, 금융, 보험, 후생, 의료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 해당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향상 도모
 - 2) 지원시설 설치계획
 -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① 지원시설용지 : 35,767㎡
 - ② 지원시설설치계획 : 금융, 복지·후생, 의료, 근린생활시설 등
 - 나) 폐수처리계획
 - ① 단지 내 발생폐수(약 6,786㎥/일)는 팽성 시가지 생활오수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팽성하수도 계획에 반영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입주업체에서 1차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 위 치 : 팽성읍 신궁리
 - 처리용량 : 20,000㎥/일
 - 다) 산업(일반포함) 폐기물 처리계획
 - ① 총 발생량(매립대상) : 2,417.6톤/년
 - ② 처리계획
 - 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 폐기물 처리
 - 매립장 면적 : 19,600㎡
 - 라) 공업용수 공급계획 : 단지 내 공업용수는 기존의 팽성 배수지(기존 2,500㎥, 4,000㎥)를 이용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인입하여 공급
- (기정) 사. 기타 외국인투자지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변경) 사.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입주대상 업종
 -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생산업종
 - 다) 고용 및 기술이전 효과가 큰 일반제조업종(프로젝트매니저 추천, 입주자 심의위원회 심의)
 - 2) 입주자격(변경있음)
 - 가)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30%이상인 합작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 (기정) 나) 추팔외국인투자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변경) 나)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시점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 3) 입주한도(변경있음)

(기정) 가)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 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되, 산출한 면적률 15% 이하인 업종은 15%의 면적률을 적용

※ 기준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 면적×(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2)

(변경) 가) 입주기업이 이행하여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업집적법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되, 적용 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12%의 면적률을 적용

※ 기준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 면적×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기정) 나)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공장건축면적 이하로 입주 희망 시 사업계획서상 공장 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입주시점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 부과

(변경) 나)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면적에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공장건축면적 이하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 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함.

(기정) 다) 임대면적 한도 : 미화 200만불 당 3,305㎡ 이하

(변경) 다) 임대면적 한도 : 미화 100만불 당 3,305㎡ 이하

라) 최소임대 기준면적 : 3,305㎡이상(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50%범위내 완화적용가능)

4) 사후관리(변경있음)

(기정) 가) 임대료 :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변경) 가) 임대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① 부지가액 1%이상/년

(기정) ② 부지가액 5%이상/년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추팔 외국인투자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변경) ② 부지가액 5%이상/년 : 입주자격 미달자, 공장건축면적 및 투자계획 미이행자,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용

(기정) ※ 부지가액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변경) ※ 부지가액은 취득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기정) ③ 임대보증금 : 추팔외국인투자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시 경기도시공사에 납부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지가액의 5% 이상으로 함.

(변경) ③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 시 수탁기관에 납부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지가액의 5% 이상으로 하고 갱신계약 체결 연도의 임대보증금 역시 5% 이상으로 함. 다만,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 시 50%를 감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4회한도내에서 분납가능하며,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임대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대부지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

(기정) ④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6항 내지 제8항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의한 토지소유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변경) ④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내지 제9항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에 의한 토지소유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 (기정) 나) 추팔외국인투자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
 (변경) 나)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해지
 ①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시. 다만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함.
- (기정) ② 입주자격을 상실 및 입주한도 미달
 (변경) ②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지침 제15조에 따른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때
 ③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
 ④ 입주기업의 부지 또는 건물을 임의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⑤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시
 ⑥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활동휴지
 ⑦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미이행 또는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하여 개선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기타 계약사항 불이행 또는 법령·조례 등 위반한 경우
- 5) 기타(변경있음)
 (기정) 가) 추팔외국인투자지구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체결업체는 추팔외국인투자지구 입주 하기 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팔외국인투자지구 공장용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
 (변경) 가)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 체결업체는 추팔 임대단지에 입주하기 전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팔 임대단지 공장용지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 관리기관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
- (기정) 나) 기타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구를 포함한 추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변경) 나) 기타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 지침, 해당 임대단지를 포함한 추팔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설) 다) 2014년 8월22일 이전에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운영 지침 제15조 규정에 따른 입주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금번 관리 기본계획 변경 이전에 입주한 기업은 입주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추가부지 요청 시 종전 계약에 따라 이미 투자된 외국인 투자이행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입주제한업종(변경없음 : 표준산업분류표 9차 개정사항 반영)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9102	연탄 및 기타응집 유무연탄생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플라스터 제조)
10110	도축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10612	곡물 제분업	23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13401 ~ 13409	섬유 염색 및 가공업		블록 제조업
14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경 기 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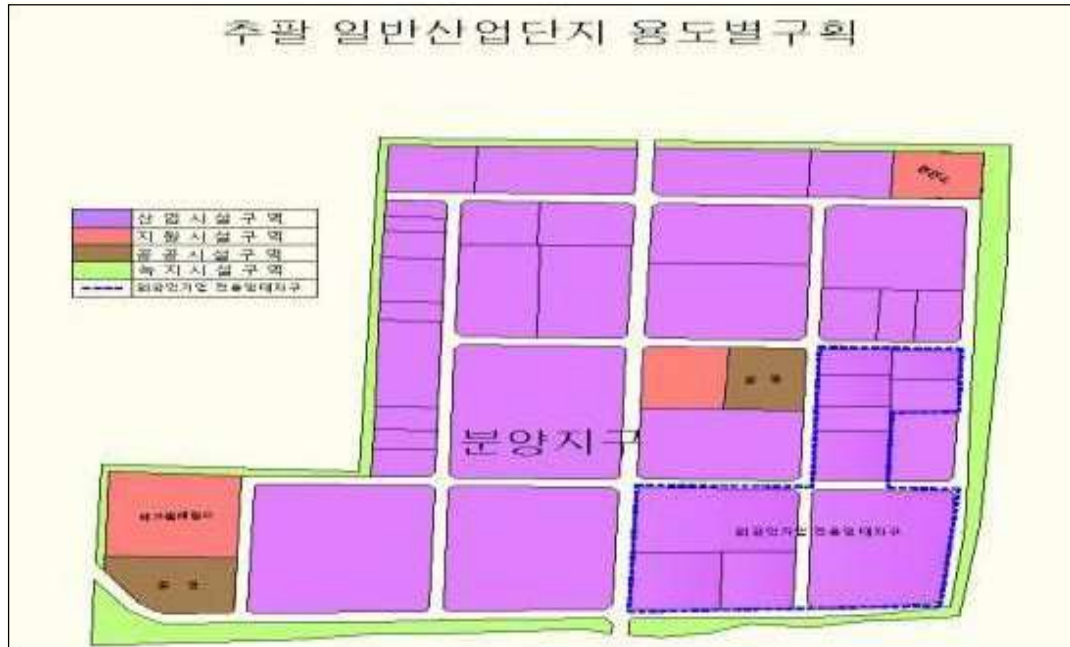
제5123호

2014. 12. 12.(금)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15110	원피 가공 및 가죽 제조업 (원피 가공)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
16212	강화 및 재생목재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건설용 이외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
17110	펄프 제조업	23991	아스콘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성형제품 제조)
17122	인쇄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26956	기포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탄소섬유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
19210	원유정제처리업	24111	제철업
19221	유탄유 및 그리스 제조업	24112	제강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우라늄광 및 토륨광 농축)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0131	무기안료및기타금속산화물제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132	합성염료,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비철금속 가압 주조업)
23312	석회 및 프라스터 제조업 (석회 제조)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22	도금업

붙임 : 1. 용도별 구획평면도 1부
2. 업종별 배치계획도 1부

[별첨 1] 용도별 구획평면도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